

○○ 학교 신축공사 설계하자에 따른 보증보험청구 관련 채무부존재확인

소송종류	민사소송	법원명	대법원
사건번호	2021다○○○○○○○ [3심]	사건유형	채무부존재
원고	(주)○○○○○○○○건축사무소	피고	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
판결선고일	[3심]2021.12.16. 심리불속행기각	비고	[1심]2020.10.16. 원고일부승 [2심]2021.08.27. 항소기각
사건개요	<p>○ 원고는 2017.12.27. ○○학교 신축공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8.7.3. 설계도서를 납품하였으나, 공사 진행 중 설계도서와 현장 간 지반고 차이로 인한 설계 및 기초공법 등의 변경으로 57일간 공사가 지연되어 총 304,860,000원의 공사비가 증액됨.</p> <p>○ 피고가 원고의 설계하자를 이유로 증액된 공사비에 상당한 금액을 보증보험 청구하자, 원고는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를 막기 위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함.</p> <p>※ 1심 진행시, 위 금액 전체를 손해로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의견(결과적으로 학교시설에 투입됨)을 고려하여 공사지연으로 인한 물가변동에 따른 변경계약 금액 106,756,000원으로 손해배상액을 조정함</p>		
주문	<p>1. 상고를 기각한다.</p> <p>2.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</p>		
1심 및 2심 판결요약	<p>○ 최초 설계도서에는 원고의 과실로 계획지반고에 따라 조성될 부지의 지반고와 지반조사서의 지반고 사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반조사서의 지반고를 기준으로 작성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설계지내력 확보가 불가능하게 된 하자가 있음.</p> <p>○ 이로 인하여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 위 신축공사 초기에 57일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고 원고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실제 발생한 물가변동금과 예정 공정표에 따른 물가변동금의 차액 상당인 106,756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.</p> <p>○ 다만 변경된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 기간 21일 모두 원고 책임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적절하여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원고의 책임을 80%로 제한함.</p>		